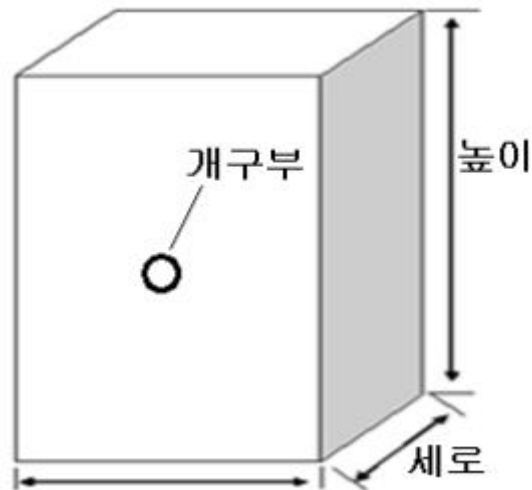


[별표 4] 등급용 소화시험(제37조 관련)

1. 소화등급시험모형

소화시험등급	소화시험 모형크기(mm)	비고
1등급	가로(600) × 세로(600) × 높이(1000)	세부모양 및 치수는 [소화 시험 모형크기]와 같음
2등급	가로(900) × 세로(900) × 높이(1500)	
3등급	가로(1200) × 세로(1200) × 높이(2000)	
4등급	가로(1500) × 세로(1500) × 높이(2500)	
5등급	가로(1800) × 세로(1800) × 높이(3000)	



[소화모형 규격]

※ 시험모형 중간지점에는 소화모형이 자연 소화되지 않도록 직경 30 mm 이상의 개구부 2개를 마주하게 설치할 것

2. 시험방법

가. 시험의 일반조건

- 1) 시험실은 출입문이 있는 실내공간으로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.
- 2) 소화시험은 무풍상태에서 해당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는 상태로 소화시험모형에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 개구부등을 추가

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설계된 개구부를 설치한 상태에서 소화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- 3) 화재모형에 고체에어로졸의 직접 분사를 방지하는 차폐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한다.

나. A급 목재 소화시험

- 1)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(9 ~13) %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한다.
- 2) 해당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소화시험용 목재규격 및 배열 방법에 의하여 목재를 배열시킨다.
- 3)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다음 표에 의한 시간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시험한다. 다만,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.

등 급	예비연소시간(분)
1,2 등급	4분
3,4,5 등급	6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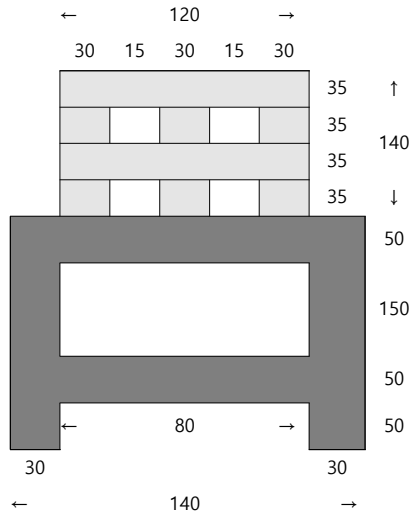
- 4) 예비연소시의 연료는 n-헵탄을 사용하고 연료량은 다음 표의 양으로 연소시킨다.

등 급	n-헵탄의 양
1 등급	70 ml
2 등급	100 ml
3,4,5 등급	200 m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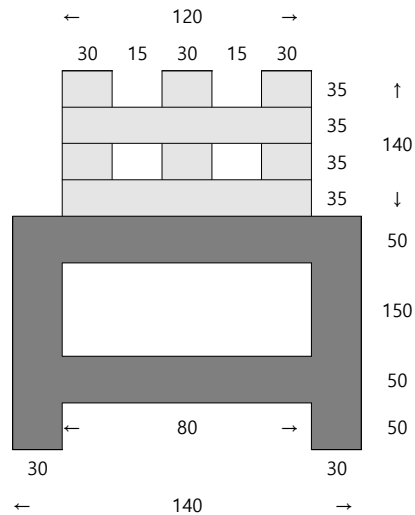
[A급 화재모형크기]

등급	화재모형크기(가로×세로)	비고
1등급	가로(120 mm) ×세로(120 mm)	3열4단배열
2등급	가로(150 mm) ×세로(150 mm)	3열4단배열
3,4,5등급	가로(200 mm) ×세로(200 mm)	3열4단배열

(1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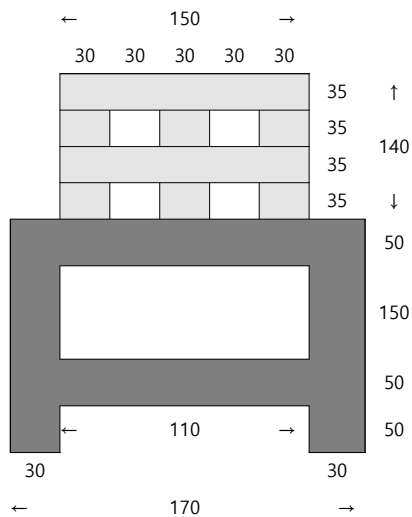


측 면 (단위 : 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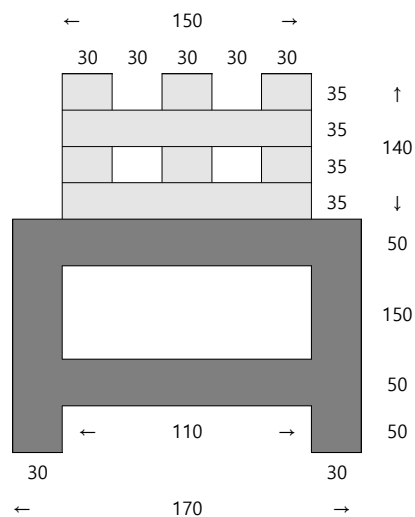


정 면 (단위 : mm)

(2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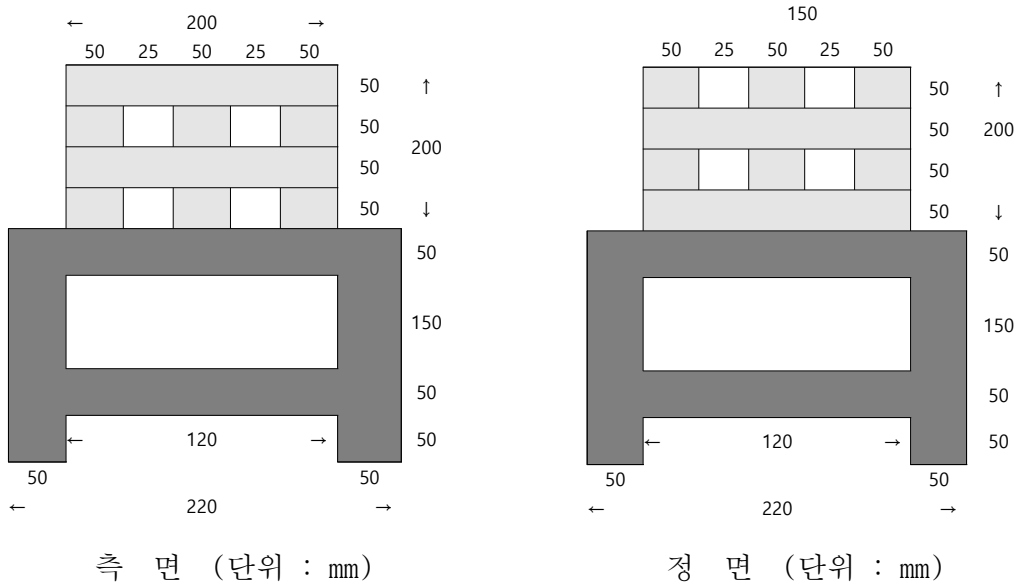


측 면 (단위 : mm)



정 면 (단위 : 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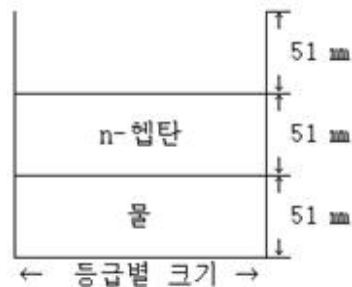
(3, 4, 5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)



다. B급 유류 소화시험

- 1)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n-헵탄을 사용한다.
- 2)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다음과 같이 연료와 물을 채운다.

(철계두께 : 3mm)



[B급화재 모형크기]

등급	화재모형크기(가로×세로)	비고
1등급	가로(100 mm) × 세로(100 mm)	
2등급	가로(150 mm) × 세로(150 mm)	
3등급	가로(200 mm) × 세로(200 mm)	
4등급	가로(250 mm) × 세로(250 mm)	
5등급	가로(300 mm) × 세로(300 mm)	

- 3)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0초 동안 예비연소 후에

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시험한다. 다만,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.